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	
		배포일시	2021. 6. 24.(목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건축안전과	담 당 자	• 과장 오진수, 사무관 최민중, 주무관 노운용 • ☎ (044) 201-4987, 4989, 4986	
	건설산업과		• 과장 김광림, 서기관 김학원, 주무관 안응철 • ☎ (044) 201-3538, 3509, 3511	
	건설안전과		• 과장 한명희, 서기관 정덕기, 사무관 안일찬 • ☎ (044) 201-3573, 3552, 3562	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국토부, 중앙 사고수습본부 5차 회의개최 해체공사 및 불법하도급 개선방안 집중 논의

- 해체공사에 이어 불법하도급 현장점검도 실시 -

-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6월 24일(목)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본부장(노형욱 국토부 장관) 주재로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.
- 이번 회의에서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 및 제도미비, 불법 하도급 등 사고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에 대한 조치현황 및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.
- 우선, 해체공사 현장점검에 대해 살펴보면 ‘정부-지자체 합동점검’ (6.16~6.30)은 당초 140개소였던 점검대상을 207개소로 확대*하여 진행 중이며, 위반사항이 적발된 현장은 공사중지와 함께 즉시 시정을 조치 중이다.
- * 인접 버스정류장 등 GIS 분석을 추가 실시하여 위험 현장 60여개 추가 선정
- ‘정부-지자체 합동점검’과 별개로 모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.

- 이와 함께, 최근 실시한 ‘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대책회의(6.16)’를 통해 제출받은 전국 시·도의 제도 개선 건의사항과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이슈사항을 고려하여 상주감리 및 착공신고 제도 도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 중이며,
 - 해체공사 안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체화하여 조속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.
 - 그리고 보다 촘촘한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인구 50만 이하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.
 - *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의 경우 '21.12월까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
-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하였다.
 - 최근 적발된 불법 하도급 사례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발생 유형, 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.
 - 또한, 전국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, 지방청,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.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장 중 불법하도급 정황이 의심되는 130여곳 현장에 대해 6월 28일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.
 - * 점검결과 불법재하도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이날 노형욱 중앙 사고수습본부장은 “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”을 지시하며, “아울러, 점검을 통해 현장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행력과 실효성을 갖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최민중 사무관(☎ 044- 201-4989), 건설산업과 김학원 서기관(☎ 044-201-3509), 건설안전과 안일찬 사무관(☎ 044-201-356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